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권한이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34조 개정)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함.

다.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라.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안 제71조 개정)

인구 5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함.

마.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정비(안 제120조 및 제121조 개정)
시·군·구 특례협의회 구성·명칭,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지방이양 관리 지원 등)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이하 “이양사무등”이라 한다)의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이양사무등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현황 등을 제공하고 이양사무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사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이양사무등의 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중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사무”로 한다.

제71조제7항제1호 중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을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특례협의회”를 “시·군·구 특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의회”를 “특례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의회”를 “특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특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지방이양 관리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이하 “이양사무등”이라 한다)의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이양사무등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현황 등을 제공하고</u>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
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
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
록 해야 한다.

<신설>

<신설>

③ ~ ⑤ (생략)

이양사무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사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이양사무등의 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 -- 경우 제2호에 따른 위
원을 과반수로 하며, -----
-----.

1.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추
천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교육계·법조계·언
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
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
은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
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
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
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
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생략)

② (생략)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⑥ (생략)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과 광
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의 대상 기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사무-----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

-----.

<삭제>

1.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삭제>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회의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한다.

⑦ ~ ⑬ (생략)

제121조(특례협회의의 구성·운영) ① 시·군·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

③ (현행과 같음)

④ ----- 특례협
의회의 -----

----- 특례협의
회-----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또는 제4항-----

-----.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121조(특례협회의의 구성·운영) ① -----

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u>특례협의</u> <u>회</u>(이하 이 조에서 “<u>특례협의</u> <u>회</u>”라 한다)를 둔다. ②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 ----- <u>특례협의</u> <u>회</u>----- -----. ② ----- ----- <u>20명 이내</u>-----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06